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가안전보장 관련 선박의 입항처리 규정 마련 〉
■ 조경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881호)

2025.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국가안전보장 관련 선박의 입항처리 규정 마련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조경태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1. 26.
3. 회 부 일 : 2024. 11.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UN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정부는 UN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에 대해 해상 승선검색을 진행한 후 항만으로 이동시켜 검색·조사를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출입 신고·수리 절차를 거쳐 입항하는 통상적인 선박과는 달리 UN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의 경우 입항 신고 없이 항만에 진입하고 있어, 항만질서의 유지와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입항 처리 조치가 필요함.

따라서 법 제4조에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관계기관장 등의 요청에 따라 항만에 진입하는 선박은 해당 선박의 입항 신고·수리가 없더라도 입항 처리가 되도록 조항을 신설함(안 제4조).

Ⅲ. 검토의견

1. 국가안전보장 관련 선박의 입항처리 규정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가보안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입항 신고 없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진입한 선박은 출입신고 및 수리가 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조(출입 신고) ①·② (생략) <u><신설></u>	제4조(출입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관리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입항 신고 없이 진입한 선박으로서 무역항 출입에 관한 특별한 필요가 인정되는 선박에 대하여 제1항의 출입 신고 및 제2항의 수리가 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u>
③ (생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무역항에서의 항만질서 유지를 위하여 선장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해양사고구조에 사용되는 선박 등을 제외한 모든 선박을 입출항하려는 경우에 관리청(해양수산부 또는 시·도지사)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¹⁾ 전시·사변이나 국가비상사태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에는 선장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²⁾

□ 그런데, 24년 최근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영해를 통과하는 선박 중 UN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반하였다고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서 승선검색 후 항만으로 이동시킨 바 있는데, 이러한 선박들은 종전의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들이 통상 항만에 입항신고절차를 거쳐 입항한 이후에 제재선박으로 억류된 점과 달리 입항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차이점이 있었음.

[최근 5년간 UN 안보리 결의 위반 선박 입항 현황]

선명	입항항	입항기간	입항 당시 신고 여부	입항 후 신고
*****	**항	'19.2~'19.6.	신고	-
*****	**항	'19.2~'19.6.	신고	
*****	**항	'21.5~'22.3.	신고	
*****	**항	'22.7~'22.9.	신고	
*****	**항	'24.3.30~'24.7.11	미신고	'24.7월 초
	**항	'24.7.12~		
*****	**항	'24.6~	미신고	'24.6월 말

※해양수산부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출입 신고)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이하 이 조에서 “선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선박은 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2. 해양사고구조에 사용되는 선박
3.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중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
4.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 대상이 되는 어선
5. 그 밖에 공공목적이나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2) 제4조(출입 신고)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에는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참고로, 해양경찰청, 외교부, 국정원 등은 UN 안보리 결의 및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무국적 선박이라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임검(공해상에서 외국선박을 단속할 수 있는 권리)이 가능함.

[UN 안보리 결의]

- ☐ (안보리결의 2375호 11항) 북한 선박과의 환적 참여, 촉진 금지 결정
- ☐ (안보리결의 2371호 8항) 북한, 석탄·철·철광석의 직간접 공급, 판매, 이전 불가 / 원산지 여부와 무관하게 북한으로부터 석탄, 철, 철광석 조달 금지
- ☐ (안보리결의 2397호 9항) 해당 선박이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이나 품목의 이전에 연관되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회원국은 자국 항구 내 모든 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 의무
 - o 영내 내의 모든 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 가능

[UN 해양법 협약]

제110조 임검권

1. 제95조와 제96조에 따라 완전한 면제를 가지는 선박을 제외한 외국선박을 공해에서 만난 군함은 다음과 같은 혐의를 가지고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한 그 선박을 임검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다만, 간섭행위가 조약에 따라 부여된 권한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 (a) 그 선박의 해적행위예의 종사
 - (b) 그 선박의 노예거래예의 종사
 - (c) 그 선박의 무허가방송예의 종사 및 군함 기국이 제109조에 따른 관할권 보유
 - (d) 무국적선
 - (e) 선박이 외국기를 게양하고 있거나 국기제시를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군함과 같은 국적 보유

- ☐ 개정안은 이와 같이 관계기관의 조치(영공해 승선검색 후 항만으로 이동)에 따라 신고 절차 없이 항만에 진입하는 선박에 대해서

입항처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UN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의 출입허가 대상 선박지정과 항만사용료 징수 등의 이후의 후속적인 행정조치를 하려는 데에 그 입법의의의가 있음.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입항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해양경찰청 등이 의심선박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선박이 대북제재 의심 선박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선박은 현행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항 시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선박에 해당 됨³⁾에도 이를 적용하기가 어렵고, 당시 해당 선박은 입항 직후에도 입항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청이 동 선박에 대한 항만사용료를 징수⁴⁾하기가 어려웠다는 설명임.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출입 신고)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에는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출입 허가의 대상 선박)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외국 국적의 선박으로서 무역항을 출항한 후 바로 다음 기항 예정지가 북한인 선박
2. 외국 국적의 선박으로서 북한에 기항한 후 1년 이내에 무역항에 최초로 입항하는 선박
- 2의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한 외국인 선원이 승무하였던 국제항해선박(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항해선박을 말한다)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
3.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국가보안기관의 장(이하 “국가보안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

4) 「항만법」 제41조(항만시설의 사용) ① 항만시설(항로표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관리청[제10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항만시설운영자”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의 사용허가를 받을 것
2. 관리청과 임대계약을 체결할 것
3. 항만시설운영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할 것
4. 제1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할 것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임대계약자”라 한다)의 승낙을 받을 것

제42조(항만시설의 사용료 등) ① 관리청,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는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따라서, 사전 입항신고 없이 무역항에 진입하는 선박에 대하여 관련 절차가 마련될 경우, 관리청이 무역항의 항만질서 유지를 위해 해당 선박을 관리·감독할 수 있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보여짐.
- 참고로, 현재까지 ‘입항신고 없이 무역항에 진입한 선박’의 사례는 2024년에 2차례이며 해당 선박들의 경우는 선장·대리점이 최종적으로 출항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 관리청에 입항신고(1척: 입항 후 3개월, 1척: 입항 후 15일 이내)를 한 바 있음.

□ 다만, 개정안은 그 입법방식에 있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가보안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입항 신고 없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진입한 선박은 “출입 신고 및 신고수리가 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발의 취지가 입항 신고 자체가 없더라도 입항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이는 통상적인 신고 및 신고 수리간주 규정의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상이한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비교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 통상적으로는 “행정청”의 신고 수리의 간주 규정만을 두는데 신고 수리의 간주는 신고 관련 사항의 신속한 처리와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말하는데⁵⁾, 개정안은 관리청에 의한 신고 간주와 신고수리 간주

규정을 함께 두고 있음.

- ☐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UN 안보리 결의 이행 및 무역항
항만질서 유지를 위해 선장의 입항 신고 없이도 입항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19

5)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p341, 국회사무처 법제실